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규근·김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62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차규근・김영환・김준형

신장식 · 김재원 · 정춘생

황운하 · 오기형 · 서왕진

김남근 · 김남희 · 김현정

한창민 · 이해민 · 조 국

박은정 • 김선민 • 강경숙

의원(18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,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%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,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, 할증평가비율이 국 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%까 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 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3항 전단 중 "이하 이 항"을 "이하 이 조"로, "100분의 20"을 "100분의 20(이하 이 조에서 "할증평가비율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할증평가비율이 「국세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세기본법」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할증평가비율에 가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최대주주등은 결정된 할증평가비율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국세청장에게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재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함께 제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・	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60	③
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	
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	
에 해당하는 주주등( <u>이하 이</u>	<u>০</u> ০ ক ০
<u>항</u> 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	<u>조</u>
의 주식등(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중소기업,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	
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	
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	
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에	
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	
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주식등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	
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	
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	
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	
그 가액의 <u>100분의 20</u> 을 가산	<u>100분의 20(이하 이 조</u>
한다.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	에서 "할증평가비율"이라 한다)
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	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 (생략)

\_\_\_\_\_

-----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장은 할증평가비율이 「국세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실질과 세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「국세기본법」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할증평가비율에 가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최대주주등은 결정된 할증평가비율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해당 최대주주등은 재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.

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